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의회조례 중 제12조 법률이 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청 구 기.준

1977년 10월 31일

서울특별시조례 제 7271호

서울특별시 의회조례 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의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조 중 "별표 1 의회직급구분표 및 별표 2 의회정약표의 타미"를 "국무
의회규정(대통령령)의 별표 1 의회직급구분표 및 별표 2 의회정약표를 존용
함임"로 한다.

제 4조 중 "별표 3 의회비정약표에 외함임"를 "국무의회규정의 별표 3
의회비정약표를 존용함"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2, 별표 3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 부터 적용한다.

(관인생략)

서울특별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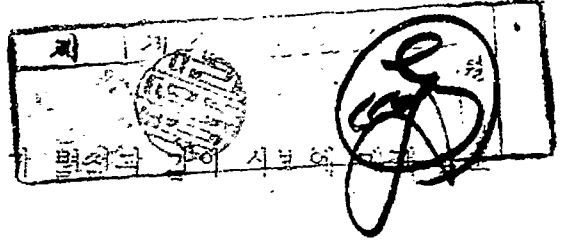
인사 181.5-15

73-7.05

1978. 1. 5.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조력공보



서울특별시여비도령증 개정조령을
의었으니 시행에 착수없도록 함.

가. 주요개령 내용

다동령(제 211호 (77.10.31)도) 개정된 "국내여비규정"
별표 1 내지 별표 5을 존용토록 함.

(1) 여비정액의 인상

(2) 갑기 여비정액의 추가: 등산시, 린루시

(3) 수도여비의 경우 "팩티오" 이용시 해당등급 구분 신설

첨부 조령 제 1211호 1부. 끝.

문 사 처 리 인	접수시	78. 1. 6.	결제			
	접수번호	70.	수명자			
	전결정		처리한	년	월	일
	물자		지사항			

수신처 서실1-3, 서관1-4, 서극1-15, 서과1-2, 서구1-13, 서출1-2,
서사1-66, 취합1-7.

